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공유수면 점용·사용의 규모 및 행위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원상회복비용 예치를 의무화함(안 제21조제7항 및 제8항 신설).
-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규정을 마련함(안 제54조의2 신설).

Ⅱ. 검토의견

○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(주서본 참조).

(전문위원 박 병 섭)